

로스쿨 도입경과와 주요 쟁점

● ● ● 김 병 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정부가 로스쿨의 개원일자를 2009년 3월로 못박고 있는 시점에서 그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시행령 제정을 위해 2005년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초안으로 만든 시행령안을 다소 손질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수렴된 의견들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로스쿨의 도입경과와 주요한 쟁점사항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술하여 로스쿨 도입에 따른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기로 하자.

I. 머리말

2007년 7월 3일은 우리 법학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 국회가 10년 여를 끌어온 로스쿨법안을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통과시킨 것이다.¹⁾ 법률은 제1장 총칙, 제2장 법학 교육위원회,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등 6개의 장과 46개 조문 그리고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명칭에서 보듯이, 로스쿨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률에 불과하다. 달라진 법학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변호사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치르며, 판사와 검사를 어떻게 임용하고 연수시킬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런 정해진 바가 없다. 사법시험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을 로스쿨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은 여전히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변호사자격시험 관련 법규의 정비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노명선, 2007: 5).

물론 정부는 근거법률이 통과되기 전인 2006년에 한국법학교수회에 '로스쿨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분야 설치인가 심사기준연구',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각각 의뢰하는 등 새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007. 7. 27 제정, 법률 제8544호). 시행일자는 2007. 9. 28(다만 평가와 관련된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은 2009. 1. 1. 시행). 이하 '로스쿨법'으로 약칭한다.

로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법률 제정 이후 로스쿨제도 시행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이 법이 규정한 법학교육위원회가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하는데, 관련 기관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그 구성에서부터 주무관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로스쿨법 제정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법무부는 최근에야 변호사시험법 제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로스쿨의 개원일자를 2009년 3월로 못박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상황은 시행령 제정을 위하여 2005년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초안으로 만든 시행령안을 다소 손질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 글에서는 로스쿨 관련 특별기획물의 개관적 내용으로 '도입경과와 주요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약술함으로써 전체적인 상황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경과 및 향후일정

로스쿨 도입논의의 시작은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법학교육 정상화 및 법조인양성에 관한 학계와 법조계의 현격한 견해차이가 나아가 영미지역 유학과와 구주지역 유학과 간의 미묘한 입장차이 등으로 인하여, 근거법률 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주요 경과와 향후일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경과]

- 1995. 01.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행정부적 세계화추진위원회 구성
- 1995. 04.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방안”이라는 공동개혁안 발표

- 1998. 06. 대통령자문기관으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설치
- 1998. 11. 새교위 산하에 ‘법학교육제도연구위원회’ 구성

- 1999. 05. 대통령자문기관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 구성
- 1999. 05. 법학교수들의 법학교육개혁공동연구회(공동대표 양승규·윤명선·김효진) 발족
- 1999. 10. 동 연구회, 개혁안으로 5~6년제 법과대학안(1안) 및 법률대학원안(2안)을 마련하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건의
- 1999. 12. 동 위원회, 대통령에게 ‘한국사법대학원’ 제도 건의

- 2003. 08.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법개혁 공동추진에 합의
- 2005. 01.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 발족

2) 7월 26일 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가졌고, 금년 12월에 초안 마련, 2008년 1월 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구성·운영, 2008년 6월 국회에 법안 제출 등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 2005. 05. 사개추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및 법령안 마련
- 2005. 1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안(정부안) 국회 제출
- 2005. 11. 법률안 국회 교육위원회 상정 및 대체토론
- 2006. 02.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의, 법률안 일부 내용수정 합의
- 2007. 07. 03. 국회 본회의 법률안 통과
- 2007. 08. 01. 동법 시행령 입법예고

[향후 일정]

- 2007. 09.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총입학정원 및 인가기준 결정
- 2007. 10.~2008. 03. 인가신청 공고·접수·심사·예비인가, 대학 선정 및 대학별 정원 확정
- 2008. 03.~2008. 10. 대학별 개원 준비, 입학전형발표, 법학적성시험(LEET) 실시
- 2008. 10. 로스쿨 설립 최종인가
- 2008. 11.~12. 대학별 입학전형
- 2009. 03. 로스쿨 개원
- 2011~ 2012 사법시험 단계적 축소
- 2013 사법시험 완전 폐지

III. 시행령 제정

로스쿨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법률 공포 후 2개월이 지나면 시행해야 하므로(2007. 9. 28), 정부는 2005년 5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성안해 놓은 시행령안의 일부 내용을 다듬어 8월 1일 입법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행령안은 한달 동안 관련 기관 및 시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조정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시행령안은 모두 2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150인 이하로 한다(제5조).
- 법학교육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설치인가” 및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
- 법학교육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학교수, 법조인, 회계전문가, 공무원, 일반시민 등으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당해 대학에 송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제7조).
-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2인으로 한다(제8조).
- 교육시설은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및 정보통신시설 등을 말한다(제9조).
- 로스쿨의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은 90학점으로 한다(제11조).
- 교육과정에는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의 교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2조).

- 로스쿨은 학생선발의 공정성 확보방안, 학사학위과정 성적, 적성시험 결과 및 외국어능력 등 입학자료 활용방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선발을 위한 특별전형의 합리적 기준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제14조).
- 적성시험을 시행할 기관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학적성시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으며, 적성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제15조).
- 개별 로스쿨은 최초 개원 후 4년, 그 이후에는 5년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제17조).
- 로스쿨은 2년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8조).

IV. 주요 쟁점

1. 로스쿨 정원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총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였고(법 제7조 제1항),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개별학교의 교원, 시설,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 총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찬가지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동조 제3항). 시행령안에서는 총입학정원에 대한 언급은 없고, 개별입학정원에 대해서만 150인 이하로 한다고 하였다(제5조).

총입학정원을 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고, 개별입학정원만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법규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관련 근거 법규의 개정절차를 밟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숫자에 관하여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학계와 법조계는 상반된 시각으로 매우 예민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교수신문, 2007.07.21). 전체 입학정원에 관하여 한국법학교수회는 3,200명,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2,500명 이상을 주장하는 반면, 대한변협은 아직 공식 의견은 아니지만 1,000 ~ 1,200명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동아일보, 2007.8.27). 양질의 변호사 양성도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었으나(소순무, 2007), 1,000명 수준으로 공급을 제한하면, 선진국에 유례가 없는 무변촌(無辯村) 해소나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법률서비스 대외개방 그리고 소송 성향에 따른 변호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결과가 된다.

개별정원에 관해서는 시행령안이 150인 이하로 입법예고하였는데, 규모가 크고 과거 사법시험 성적이 우수했던 대학들은 이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이 숫자가 적정하다고 한다(한국대학신문, 2007.08.27). 개별정원을 줄이면 로스쿨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이 그만큼 늘어나겠지만, 적은 학생수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원론적으로 로스쿨 도입의 본래적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2. 법체계

로스쿨법의 제정은 로스쿨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제 겨우 첫걸음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변호사자격시험 관련 법의 제정과 현행의 사법시험법,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로스쿨의 설립과 운영, 학사관리, 변호사시험, 법조인 선발 등 일련의 절차에서 동일한 목표와 기준에 따라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른바 패키지 입법이 되었어야 마땅하다(김종철, 2005: 47). 이들 법규들이 각각 다른 기회에 개별적으로 추진될 경우 개별 법규 간 상충 또는 입법적 불비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별입법 추진 관청은 신중을 기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3.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핵심적 기능³⁾을 담당하는 교육부장관 소속의 심의기관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위원회를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관련 분야를 폭넓게 대표하는 위원 13명으로 구성하고(법 제11조), 위원임기를 2년으로 하며(법 제12조), 일부 사안의 심의에서는 제척(除斥)도 가능하게 하는(법 제13조) 등 구성과 운영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또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두고, 현지조사단을 운영함으로써 위원회를 지원·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5조).

그런데 시행령안에서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법 제10조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6조 제3항). 로스쿨 설치인가 여부 및 개별정원 관련 사항의 경우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의결정족수를 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지나치게 엄하여 자칫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법 제15조 제1항의 조사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비상근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위와 역할에서 공무원인 간사(시행령안 제6조 제5항)와 현지조사단원 사이에서 제도 운영상 다소간 혼동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및 사실확인 결과물의 실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므로, 비상근 조사위원보다는 이 분야 전문가인 공무원을 활용하는 것이 업무의 일관성과 노하우 축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이다. 더구나 현지조사단 구성을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법 제15조 제2항), 조사위원에 대

- 3)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
2.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3. 개별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법 제10조)

해서도 법 제11조 제3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얘기도 되므로, 차후 법 개정시 재론할 필요가 있다.

4. 설치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은 대학의 설립·경영자로서 로스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법 제4조).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주체가 되는 경우, 몇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첫째는 법학이 국가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소위된 기초학문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특히 변호사양성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시스템에서 이 전공은 사적 영역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는 국공립대학의 경우 로스쿨의 자교 유치를 위하여 동일 대학의 타 전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한 재원배분을 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나아가 로스쿨 교육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교육비가 필요한 반면 등록금은 다른 사립대학 로스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고 오히려 장학금제도를 강화할 경우 납세자의 저항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5. 설치인가기준

설치인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로스쿨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40여 개 대학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예산을 투자하고 우수 교원 스카우트에 고심하고 있는 대학으로서는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암중모색하며 10월 중에 있을 인가신청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부의 의뢰에 따른 연구 결과 보고서가 2006년 9월에 발표되어 있어, 여기에 터잡아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지난 7월에 법이 통과되고 8월 1일에는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전략을 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금년 9월 28일에 시행령 공포와 함께 법이 시행되고 이에 근거하여 법학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의 자료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위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의 개요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고,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가중치 등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법률과 시행령안에 나타난 내용 중에서 '교원과 교육시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교원

로스쿨에는 학생 수 규모와 관계 없이 최소한 20명의 전임교원을 두어야 하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인 이하로 하고, 법정 정원의 5분의 1까지는 겸임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로스쿨이 확보하여야 할 교원의 5분의 1은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변호사라야 하며, 이 실무경력교원은 겸임교원으로는 근무할 수 없다(법 제16조). 전임교원의 책임 시수(時數)는 매학년도 30시간 기준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겸임교원의 주당 교수시간은 9시간을 넘지 못한다(시행령안 제8조).

로스쿨의 본래적 특성상 변호사 실무경력자를 전임교원의 20%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피

〈표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평가지표(안)

영역	배 점	배점비율(%)	평가 항목 수
① 교육목표	30	3.0	3
② 학생복지	135	13.5	6
③ 입학전형	85	8.5	7
④ 교육과정	290	29.0	19
⑤ 교원	195	19.5	10
⑥ 교육시설	125	12.5	14
⑦ 교육재정	100	10.0	7
⑧ 관련 학위과정	40	4.0	3
계	1,000점	100(%)	69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09.11; 한상희 외, 2006, 6면.

한 측면이 있고 제도 도입의 초창기에는 더욱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기준은 향후 다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욱이 겸임(초빙)교원을 20% 수준까지 허용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많은 경우 겸임교원은 학교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실무에서도 멀어지는 경계인 내지 주변인으로 밀려날 소지가 적지 않다. 유능한 변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는 주당 하나 내지 두 개 강좌만 강의하는 시간강사인 외래교수로 위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노명선, 2007: 7). 로스쿨 외래교수는 강사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통상적 의미의 시간강사와 달리 경제적 부담이 없을 것이고, 최근 들어 대부분의 대학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수준 이하의 강사는 바로 가려낼 수 있으므로 무책임한 강의로 인한 피해가능성에 대한 염려는 기우라고 본다.

2) 교육시설

물적 기준으로 로스쿨은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통신시설 등과 같은 교육 및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안 제9조). 아울러 로스쿨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재정을 확보하여, 장학금제도를 비롯한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법학전문도서관을 지을 경우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장서와 시설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안 제9조 제2항은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본다. 동조 제1항의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구체적 평가지표는 심사 단계에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오히려 재정 확보와 학생복지에 관련된 구체적 사항, 예컨대 장애인이나 여성전용공간, 대여금제도,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싶다.

6. 설치인가절차

공립 또는 사립대학 설립·경영자는 설치인가신청서(시행령안 제2조 제1항 각호 서류 구비)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다(법 제5조 제2항). 국가도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스스로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는데(법 제5조 제4항), 국가가 로스쿨을 설치할 때는 국립대학의 장이 전기한 설치인 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한다(시행령안 제2조 제1항). 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 스스로의 행정행위로 설치하는 것이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학교육위원회에 의한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하였다.

7. 로스쿨 학사운영

1) 입학전형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야 한다(법 제22조). 이는 곧 학부형이 아닌 대학원형 로스쿨을 제도화한 것이고(법 제18조), 아울러 학부 전공을 법학을 했건, 타 전공을 했건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입학자의 3분의 1은 비법학 전공자가 되도록 하였다. 나아가 동종교배 방지를 위하여 입학자 중 당해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다(법 제26조).

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시행령안 제13조), 전형요소로는 학사학위 과정의 성적, 적성시험 결과, 외국어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학교육의 개방성과 다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의 당연한 결과로 법학지식에 대한 평가 결과는 입학전형자료로 쓸 수 없다(법 제23조 제3항).

타학문 전공자의 로스쿨 입학을 유인하는 이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공무원시험이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비법학 전공학생이 자신의 전공을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로스쿨 입학전형자료인 학사학위과정 성적의 비중을 높이고, 적성시험이나 외국어능력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우리 나라와 같이 대학의 수준이 사실상 서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문제를 소홀히 할 경우 법학이 아닌 다른 학문 전반의 황폐화를 초래할 소지가 농후해진다. 또 이른바 3불정책의 하나인 고교등급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학부등급화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는데, 전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국가가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별 로스쿨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적성시험

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이란 입법적으로 정의하듯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다(법 제23조 제2항). 적성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지만,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24조).⁴⁾

적성시험 시행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적성시

험 응시수수료는 적성시험 시행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한다(시행령안 제15조).

법학적성시험의 성격, 내용, 시험과목 등을 구체화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연구책임자 김주훈)에 연구를 위탁하였다. 연구자들은 객관식 시험과목으로 각 40문항으로 구성되는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을 각 90분 내지 120분 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표 2〉와 〈표 3〉). 연구자들은 시험을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시행령안은 매년 1회 이상으로 늘려서 입법예고하였다. 적성시험의 성격이 선발이 아닌 자격시험이며, 높은 점수를 받을 때까지 수회에 걸쳐 응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므로 응시기회를 확대한 시행령안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

〈표 2〉 법학적성시험 출제영역별 세부 사항

출제영역	언어 이해 (제 1 과목)	추리 논증 (7제 2 과목)	
		추리부문	논증부문
인지 활동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적 이해 • 추론적 이해 • 비판적 이해 • 창의적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추리 • 수리추리 • 논리퍼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 및 재구성 • 반론 및 논쟁 • 판단 및 평가
내용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과학 • 사회과학 • 과학기술 • 문학예술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학, 수학 • 내용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 사회과학 - 과학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적 논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 사회과학 - 과학기술 • 실천적 논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도덕적 논변 - 정책, 의사결정 - 법적 논변
문항수	40문항	40문항	
문항형태	객관식	객관식	
배 점	100점	100점	
시험시간	90분~120분	90분~120분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09.28.

-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적성시험 시행기관을 지정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 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적성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시행령안 제15조 제1항)

〈표 3〉 법학적성시험과 다른 유사시험 비교표

명 칭	법학적성시험 (LEET) 한국 (研究案)	Law School Admission Test (LSAT) 미국	법과대학원 適性試驗 일본
시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제·인쇄·채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스쿨입학전행위원회 (LSAC, 비영리기구) (Law School Admission Counc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 기관에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부과학성 산하 “대학입시센터” - 일본변호사연합회 산하 “법무연구재단”
시행 횟수 및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4회 (2월, 6월, 10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시험 1회(매년 6월) ※대학입시센터에서 첫째는 홍보부족으로 미응시자가 있어 2회 실시하였으나 그후에는 1회 실시
시험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이해 (객관식 40문항) 추리논증 (객관식 40문항) ※ 객관식 시험과 별도로 논술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구체적 실시 방안은 추후 연구를 통하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리적추론 (Logical Reasoning) : 2과목 24~26개 분석적추론 (Analytical Reasoning) : 1과목 22~24문제 독해력 (Reading Comprehension) : 26~28문제 Experimental Section: 예비문제 작문 (Writing Sample): 30분내에 2페이지 정도 에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입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론·분석력 문제 (21문항) • 독해·표현력 문제 (45문항) <법무연구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적 판단력 (23문항) • 분석적 판단력 (22문항) • 장문 독해력 (20문항) • 논술 : 주관식 2문항
시험시간, 배점, 점수산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시간: 각 90~120분 언어이해, 추리논증 각 100점 표준점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형: 35분씩 4개 분야 5과목(실험과목 포함) 점수는 120~180점의 변환 표준점수 제공. 논술식: 35분, 채점은 각 로스쿨이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입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형: 각 90분, 각 50점 • 원점수 활용 <법무연구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형: 각 40분, 각 100점 • 논술식: 40분, 채점은 각 로스쿨이 판단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만 유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적으로 사용가능(시험 점수와 함께 누적된 점수의 평균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만 유효

명 칭	법학적성시험 (LEET) 한국 (研究案)	Law School Admission Test (LSAT) 미국	법과대학원 適性試驗 일본
특 징	•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고 능력 및 논증능력을 측정	• 법과대학원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고능력 측정	• 미국의 법과대학원을 모델로 변형하여 만들
점수활용	• 전문대학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대학원에서 자율적으로 점수 활용	•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2개 기관 성적을 활용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09.28.

3) 학위 및 수업년한

로스쿨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도 있다. 석사학위과정의 수업년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법 제18조).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전문학위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시행령안 제10조).

법 제18조의 규정은 제8조와 더불어 논란이 많았던 조항이다. 이른바 영국식 학부형 로스쿨이냐 미국식 대학원형 로스쿨이냐의 다툼이었는데(이관희, 2005: 67; 한국대학신문, 2007.06.01), 후자의 경우 영국, 독일 등의 경우에 비하여 수학기간 내지 최초 직업을 갖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며, 한국 남성처럼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권태욱, 2006). 우리나라에서는 더구나 로스쿨과 기존의 법과대학이 병존하게 되는데, 4년의 법과대학 이수 후 3년의 로스쿨은 너무 긴 시간이고, 반대로 학부에서 타 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 3년 로스쿨은 너무 짧은 시간이므로 적어도 일본에서와 같이⁵⁾ 두 가지 트랙으로 구분하여 교육내용과 수업년한을 달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학점

로스쿨 석사학위에 필요한 학점은 학칙에 정하되, 90학점으로 한다. 다른 로스쿨이나 외국에서 이에 상응한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그리고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경우 각각 15학점까지 인정해 줄 수 있다(법 제19조; 시행령안 제11조).

법 제19조 제2항과 제3항이 규정한 선수학점을 15학점 이하로 제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제2항의 경우 동일한 법에 따라 설치한 다른 로스쿨의 학점을 이와 같이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원칙적으로는 학점 전부를 인정해 주어야 하지만, 이른바 로스쿨 수준의 사실상의

5) 입학선발제도의 개방성과 입학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법학미수자(3년과정)와 법학기수자(2년과정)의 2원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상룡, 2007).

차이와 전적 로스쿨에서 취득한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로스쿨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인가취소 후 학생보호(제42조)에 관하여, 다른 로스쿨 편입학시 전적교(前籍校)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의 형평을 고려해도 지나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학부과정에서 4년 간 선수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을 15학점만 인정받게 하는 것도 지나친다. 이 문제는 앞서 본 수업년한 단축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이른바 ‘법학기수자’ 들인데, 선행학습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학부의 법학 전공학점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학부와 로스쿨의 학점이 질적으로 전혀 다르며(고상룡, 2007), 이른바 법학기수자를 위해서는 별도로 2년의 단축형 학제를 운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5) 교육과정

개별 로스쿨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 법률지식, 전문기술 등을 지도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그리고 실습과정에 사회봉사의 기회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20조; 시행령안 제12조).

시행령안에 규정한 ‘실습과정’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실습을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을 위한 모델 연구는 전기한 바와 같이 한국법학교수회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집약하여 추진한 바 있는데, 개별 로스쿨은 이를 구체적 상황에 맞게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이기수 외, 2007).

8. 평가

입법자는 로스쿨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해서는 법학교육위원회가 주된 기능을 하도록 하였지만, 로스쿨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대한변협 소속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하였다(법 제27조, 제28조). 평가시기는 학생이 처음 입학한 해로부터 4년이 되는 해에 평가를 받고, 다시 최초 평가를 받은 때로부터 5년 주기로 평가를 받도록 하였다(시행령안 제17조 제1항). 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은 평가위원회 구성도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에 상응할 정도로 자격요건(제29조), 임기(제30조), 제척사유(제31조) 등 세밀한 규정을 두었다.

위와 같은 제3자 평가와 별도로 개별 로스쿨은 2년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다시 이를 공표하도록 하였다(법 제32조; 시행령안 제18조). 이는 최근 입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⁶⁾의 내용과 상충될 가능성도 있는데, 교육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시행령 제정시 구체적으로 세목화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로스쿨 자체

6) 제정 2007.5.25, 법률 제8492호, 시행일 2008.5.26. ‘교육정보공개법’으로 약칭한다. 이 법의 시행령도 현재 준비 중에 있다.

평가 결과도 포함시키면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겠지만, 세목에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시행령안에 따라 2년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공표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입법론의 관점에서 보면, 평가기관을 법학교육위원회와 등치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하여 대변협 소속으로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다. 평가기관의 독점은 제도의 경직화를 초래하고, 로스쿨에 대한 통제기구로 탈바꿈할 소지도 없지 않다(김종철, 2005: 47). 다수의 평가기관을 인정하고 그 결과를 법학교육위원회가 인증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다.

V. 맺음말

로스쿨체제로의 전환이 우리 법학교육의 난제를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로스쿨 도입 여부를 둘러싼 그간의 논쟁에서 보듯이, 우리의 이번 선택은 여러 대안 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문제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가진 나름대로의 장점을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게 살려 나갈 수 있느냐이다. 영미법계 국가 중에서도 미국과 그 직접적 영향을 받는 캐나다 정도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이 체도를 도입하였을 뿐이다. 지금까지 주요 쟁점을 되짚어 본 까닭은 향후 시행상의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제도 운영과정에서 이를 참작하면서 조심스럽게 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도 운영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관점은 법학교육의 정상화이다(이기수 외, 2006: 12ff). 이른바 “선발에서 양성으로”의 발상 전환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변호사 자격시험 및 연수, 법조인 임용 등 전 과정이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국제경쟁력을 가진 법률가 양성이 가능해지고, 법률개방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도 비법학도들의 사법시험준비로 인하여 대학 전체 교육과정 운영에서 난맥상을 연출한 경우가 많았는데, 로스쿨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풍조가 더욱 번질 소지가 있으므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자칫 학부 수준의 개별 전공도 소홀히 하고, 로스쿨에 진학하여 이수하는 법학교육도 미흡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엄정한 학사관리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할 경우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마련이다(손창호, 2007: 45; 中西一裕, 2007: 48).

끝으로 로스쿨 입학정원을 변협이 주장하는 수준으로 축소하면, 고시 낭인 대신 로스쿨 낭인과 로스쿨 입학을 위한 사교육이 횡행할 것이고,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70% 이하로 낮출 경우, 로스쿨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로스쿨 응시자 수의 감소, 나아가 로스쿨 폐교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로스쿨법의 입법취지에 상응하도록 변호사자격시험 관련 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하는 이 제도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학계와 법조계 모두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한우**

참고문헌

- 강희원(2006). “법학전문대학원에 졸업정원제를 도입하자”, 법률신문, 2006.04.13.
- 고상룡(2007). “일본 로스쿨의 현황과 과제 (상)(하)”, 법률신문, 2007.08.27, 2007.08.30.
- 교육인적자원부(200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설명자료집(2판).
- 권태욱(2006). “황당한 로스쿨 도입 구상 계속해야 하나?”, 프레시안, 2006.02.03.
- 김중철(2005).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대학교육(한국대학교육협의회), Vol. 138, 2005. 11/12월호, 45-50면.
- 김주훈 외(2006).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노명선(200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몇 가지 제언”,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102호, 2007.7/8월호, 2-7면.
- 도중진(2005). “일본 법과대학원(로스쿨)의 출범과 전망”, 대학교육(한국대학교육협의회), Vol. 136, 2005. 7/8월호, 73-76면.
- 박상기(2005). “한국형 로스쿨 도입의 쟁점과 전망”, 대학교육(한국대학교육협의회), Vol. 136, 2005. 7/8월호, 68-72면.
- 백현기(2007). “로스쿨의 입학정원”, 법률신문, 2007.08.09.
- 소순무(2007). “로스쿨,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법률신문, 2007.04.17.
- 손창호(2007). “법 전문인력 공급체제로서의 로스쿨 제도”,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102호, 2007.7/8월호, 42-45면.
- 오육환(2006). “로스쿨 논쟁, 교육내용에 초점을”, 동아일보, 2006.05.11.
- 이관희(2005). “로스쿨 도입 반대 이유와 대안”, 대학교육(한국대학교육협의회), Vol. 136, 2005. 7/8월호, 63-67면.
- 이관희(2007). “한국 로스쿨제도의 성공 조건”, 법률신문, 2007.08.20.
- 이기수 외(2007). 로스쿨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 정용상(2007). “로스쿨 발전을 위한 제언”, 법률신문, 2007.07.16.
- 한상희 외(2006).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분야 설치인가 심사기준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 中西一裕(2007). “總合 點檢 法科大學院의 現在”, 이정민 역,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102호, 2007.7/8월호, 46-50면.

김병주

국민대 법학과 및 동 대학원을 수료하였고, 독일 튀빙겐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독일소년사법보호제도(공저), 북한정부론(공저), 가정폭력, “대학정보공시제”, “대학평가의 법적 문제: 입법론”, “독일대학의 자율 강화 움직임” 등 다수가 있다.